

시설공사 수의계약(2인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도로 사면 보강 공사		
공 사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충효동 일원(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현장)		
공 사 개 요	· 도로 사면 보강 공사(H=0.53~3.5m, L=83m)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	233,200,000원 (추정가격	212,000,000 원, 부가가치세	21,200,000 원)
추 정 금 액	233,200,000원 (기초금액	233,200,000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0 원)
견 적 서 제 출 기 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견 적 방 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구 광주광역시,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공업종제한(토목공사업)		
현 장 설 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2팀 (☎062-600-6754)		

-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이니다.
-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 후 7일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건설업등록수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 본 공사는 기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공사로서 상수공, 오수공, 포장공 등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기존 시설물과의 연속성 확보 및 공정 간 종합적인 시공관리와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견적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구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 구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인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자가 각각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계약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산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2,035,184	2,689,047	267,423	1,302,064	3,651,696	-	-	9,945,414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협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합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을 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직접시공 관련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관리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14.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2팀 ☎062-600-6754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